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5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교보증권

2. 조치내용

○ **(원안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71조에 따른 핵심(요약)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과태료 1,000백만원 부과

○ **(수정심의)**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에 따른 핵심(요약)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과태료 390백만원으로 수정 심의

* 과태료의 위반건수의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과태료를 재산정
: '핵심(요약)설명서의 미교부 건수' → '거래설명서 개정횟수'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핵심(요약)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

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위험, 상품특성,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, 해당상품의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등을 포함한 핵심(요약)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,

◦ 교보증권㈜은 2021.5.10. ~2023.5.31. 총 853개의 CFD(Contract For Difference, 차액결제계약) 계좌를 개설하면서 개인인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할 핵심(요약)설명서를 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, 이에 개인인 투자자에 핵심(요약)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, 제449조 제1항 제29호
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나목, 제390조 [별표22]
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의2 제3항
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, 제3항 [별표 3]